

밀양강 낚시통제구역 지정 고시

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통제 구역 지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7월 27일

밀 양 시 장

1. 낚시통제구역의 명칭: 밀양강 낚시통제구역
2.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위 치: 밀양강 일원(도면 참조)
 - 가곡동 야외수영장 ~ 용두목 철길기점 ~ 부북면 제대천 기점 ~ 가곡동 제2수중보
 - 나. 면 적: 1,466,456m²
3.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사유
 - 가.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 및 수생태계 보호
 - 나.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
4.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: 2023년 8월 1일 ~ 2028년 7월 31일
5.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연월일: 2023년 7월 27일

6.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 대한 처분

근거법령	과태료
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1호	- 1회 위반 20만원 - 2회 위반 40만원 - 3회 위반 80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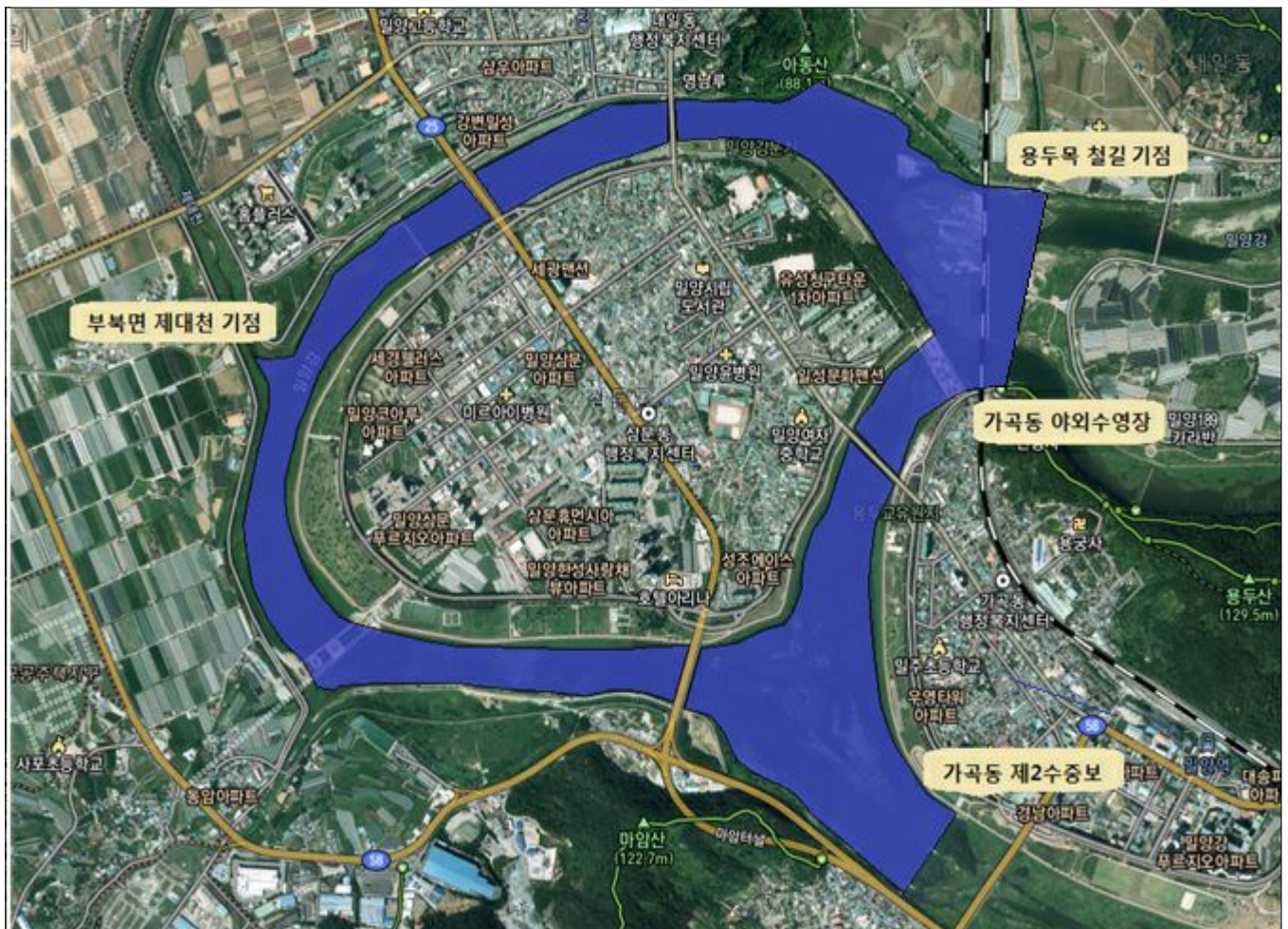
※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의 보전·복원행위 및 학술 조사 등은 제외

7. 낚시통제구역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

가. 관리기관: 밀양시 축산과

나. 기 타: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(<http://miryang.go.kr>)를 참고
 하시기 바라며,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면 밀양시 축산과(☎055-359-7172)로
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8. 위치도(도면)



○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사항(접수번호:17350873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○ 축산과

- 우리 시는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낙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있으니, 붙임을 통해 낙시통제구역의 명칭, 위치 및 면적, 통제기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붙임 밀양강 낙시통제구역 지정고시 1부.

○ 환경관리과

-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구내용은 우리 시 낙시금지구역 현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
- 우리 시는 「상수원관리규칙」에 의거 교동 및 상동면 일원(1986. 10.)과 밀양댐 일원(2000. 10.)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, 「수도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낙시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아울러,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(WAMIS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(<https://www.wamis.go.kr>)
- 또한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구위양저수지(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294번지 일원)를 낙시금지구역으로 지정·관리하고 있습니다.

○ 정보공개 내용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축산과 축산행정담당(055-359-7172),
환경관리과 수계관리담당(055-359-5305)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